

# 투자권유준칙

제정 2009...

## 제 1 편 총칙

### 제 1 조(목적)

이 준칙은 얼라이언스벤처스 자산운용(주)(이하 “회사” 라고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 71 조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 57 조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 9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 10 조제 1 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가.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 1 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 라 한다)를 작성 • 제출한 일반투자자

(2) 정보미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4. “파생상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파생결합증권

다. 법 제 93 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 3 조(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전문투자자(제 1 항에 의거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인 경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6 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 4 조(투자권유의 원칙)**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 제 5 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① 임직원등은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고객(일반투자자인 고객을 말한다. 이하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에서 같다)**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별지 1 의 Part I)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 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기초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평가결과 투자성향”이라 한다)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지 1 의 Part II)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위험선호 투자성향”이라 한다)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험선호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선호 투자성향이 평가결과 투자성향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별지 제 3 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 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 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5 호라목의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임직원등은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⑦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관련기록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제 6 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등은 제 5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지 제 4 호 참조),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 5 호 참조)
- ④ 임직원등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 3 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 65 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만을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 나.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2. 만 65 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이거나 만 65 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다음 각 목의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일반투자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파생결합증권
    - 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다. 장내파생상품
- ⑤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고객이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도 해당 거래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 7 조(설명 및 위험고지)

- ① 임직원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 "투자유의사항" 이라 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 123 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 8 조(부당권유의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법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신탁재산(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법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탁재산[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그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5. 고객 (전문투자자와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 229 조제 3 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 제 9 조(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한 금지행위 등)

임직원등은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증권
2. 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4. 신용거래 및 예탁재산 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권거래
5. 파생상품등

### 제 10 조(핵심설명서의 교부)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관련 위험사항이 포함된 핵심설명서 및 Quick Guide 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Quick Guide 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1 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 1 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3 조(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인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 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또는 제 4 조의 2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1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 103 조제 3 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 4-82 조제 1 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 제 3 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준칙

### 제 16 조(계약의 체결)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 1 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제 17 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법령에서 제 1 호 및 제 2 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고객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제 4 편 보칙

##### 제 18 조(점검)

회사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2009.2.> (1)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 년 2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정보 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정보 변경
-----------------------------------	--------------------------------

<기초정보>

PART 1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9 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세 ~ 40 세 <input type="checkbox"/> 41 세 ~ 50 세 <input type="checkbox"/> 51 세 ~ 60 세 <input type="checkbox"/> 61 세 이상	
2.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 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6 개월 이상 ~ 1 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1 년 이상 ~ 2 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2 년 이상 ~ 3 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3 년 이상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p>4. 고객님께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p>	
<p>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p>	<p><input type="checkbox"/> 10% 이내</p> <p><input type="checkbox"/> 10% 이상 ~ 20% 이내</p> <p><input type="checkbox"/> 20% 이상 ~ 30% 이내</p> <p><input type="checkbox"/> 30% 이상 ~ 40% 이내</p> <p><input type="checkbox"/> 40% 이상</p>	
<p>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p>	
<p>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p>	

<위험선호도>

<b>PART 2</b>	
<p>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필요시 판매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기타>

<b>PART 3</b>	
<p>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투자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        년        월)</p>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성명	서명/인	날짜	년 월 일
--------	------	----	-------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불원	<input type="radio"/> 고객정보 제공 <input type="radio"/> 고객정보 미제공
--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께서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및 일반투자자로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증권
2. 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4. 신용거래 및 투자자예탁재산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권거래
5. 파생상품 등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펀드)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   한 경우)

본인은 상기 투자자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년   월   일

고객명 :                   (인 또는 서명)

○○ 회사(주) ○○지점    상담자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 2 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I)>

□ 문항별 배점

- 1 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2 점, ⑤로 응답한 경우 1 점
- 2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3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 5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 점, ②로 응답한 경우 4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2 점, ⑤로 응답한 경우 1 점
- 6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 점
- 7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 점, ④로 응답한 경우 6 점

□ 점수 계산 방법

- 1 번부터 7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 점)하고, 이를 100 점으로 환산

(예) 1 번부터 7 번까지의 합이 26 점인 경우,  $26 \text{ 점} / 32 \text{ 점} \times 100 = 81.3 \text{ 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 20 점이하 : 안정형
- 20 점초과 ~ 40 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 점초과 ~ 60 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 점초과 ~ 80 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 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 제 3 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 ~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 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ELF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 단계로 분류

<별지 제 4 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lt;별지 제 5 호&gt;

## &lt;투자자 확인서&gt;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

본인은 ○○회사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서명 :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

본인은 ○○회사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른 본인의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회사로부터 본인이 지정한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해당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투자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회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투자권유도 받지 않았으며, 상기 거래가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 고객의 서명 :